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16호

##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 2. 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포상금 지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의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 격려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신고포상금 또는 격려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7,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cost403@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8
----------	-----

발의연월일 : 2023. 10. .

발 의 의 원 : 이정희 · 강창석 · 김경수 · 김영록 · 김혜란  
박강우 · 서영권 · 성보빈 · 이해련 의원(9명)

찬 성 의 원 : 구점득 · 손태화 의원(2명)

## 1. 제안이유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포상금 지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의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 격려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신고포상금 또는 격려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
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4. 그 밖의 사항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에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금고형)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격려품의 지급)**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자동차 매연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등의 경우를 말한다)에는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격려품은 1명당 월 2만원,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처리 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지급 받은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금고형)	- 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 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경고,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 3.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 4.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

[별지 서식]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금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 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  
[별표]

###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 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 고	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 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 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